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
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의 개정(법률 제21119호, 2025. 11. 11. 일부개정, 2026. 11. 1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,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(안 제17조의2 신설)
- 나.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22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)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
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·홍보
2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지원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의2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
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
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의 공유·관리에 관한 사항
2.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
3.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·분석
및 통계 산출 등에 관한 사항

5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의 지원 및 자료 관리에
관한 사항

②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
사정이 없는 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17조의2(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) 법 제23조 제1항제7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u> 1. <u>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사업의 안내·홍보</u> 2. <u>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지원</u>
<u>제22조의2(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1. <u>잔여 병상의 수·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</u>	<u>제22조의2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1. <u>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의 공유·관리에 관한 사항</u> 2. <u>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</u>

<u>2. 보유 질환,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</u> <u>3. 그 밖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연계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 보</u>	<u>중인 환자의 정보 관리에 관 한 사항</u> <u>3.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협력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</u> <u>4.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통계 산출 등 에 관한 사항</u> <u>5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 피스전문기관 평가의 지원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②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05